[별지 제4호 서식]

외부감사 실시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회 사 명	
감사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단위: 명, 시간)[1]

감사참여자 / 인원수 및 시간[5]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 등 전문가[3]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4]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 회계사		수습 공인 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6]															
투입 시간[7]	분·반기검토														
	감사														
	합계														

주: 1) ① 각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시간이 없을 경우 "-" 로 표기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기재. 단,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인원수 및 감사시간을 추가 반영 가능

③ 분·반기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 및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 등 포함)에 투입된 감사참여자 수와 감사참여자의 투입 시간 (행정직원 등은 감사참여자에 불포함)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의 등록·수습 여부는 감사보고서일자를 기준으로 구분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는 제외)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의 경우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당기)의 직전 사업연도(전기) 해당 내용은 작성하지 아니함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여 기재하고, 각주를 달아 수정내용과 사유를 설명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은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있는 수치를 기재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힘

6) 감사참여 인원수 모두를 기록 (예를 들어, 품질관리검토자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검토자와 담당이사가 각각 2명 이상일 수 있음)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

3. 주요 감사실시내용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내 역[1]</th></tr>
<tr><td>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td><td colspan="3">- 수행시기[2] : 20xx. xx. xx.~ 20xx. xx. xx. (oo일)
- 주요내용 :</td></tr>
<tr><td rowspan="4">현장감사
주요내용[3]</td><td>수행시기[2]</td><td>투입인원[4]</td><td>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td></tr>
<tr><td>. . . ~ . . .
(일)</td><td>상 주 ( )명,
비상주 ( )명</td><td></td></tr>
<tr><td>. . . ~ . . .
(일)</td><td>상 주 ( )명,
비상주 ( )명</td><td></td></tr>
<tr><td>. . . ~ . . .
(일)</td><td>상 주 ( )명,
비상주 ( )명</td><td></td></tr>
<tr><td>재고자산실사(입회)</td><td colspan="3">- 실사(입회)시기[2] : . . . ~ . . . (일)
- 실사(입회)장소[5] :
- 실사(입회)대상 :</td></tr>
<tr><td>금융자산실사(입회)</td><td colspan="3">- 실사(입회)시기[2] : . . . ~ . . . (일)
- 실사(입회)장소[5] :
- 실사(입회)대상 :</td></tr>
<tr><td>외부조회</td><td colspan="3">금융거래조회[6] ( ), 채권채무조회[6] ( ), 변호사조회[6] ( )
기타조회[7] ( )</td></tr>
<tr><td>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8]</td><td colspan="3">- 커뮤니케이션 횟수 : ( )회
- 수행시기 : xxxx.x.xx, xxxx.x.xx</td></tr>
<tr><td>외부전문가 활용</td><td colspan="3">- 감사 활용 내용[9] :
- 수행시기 : . . . ~ . . . (일)</td></tr>
</table>

주: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등에는 "-" 로 표기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또는 날짜)과 일수를 기재. 단,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현장감사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일수 계산 시 제외 (예, 현장감사 수행시기 : 2015.2.2~2015.2.10 (7일))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 수행시기와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내역을 구분하여 표시

② 감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내용만을 기재하며, 감사현장 철수 후 감사절차 보완 및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

4) 감사참여자(품질관리검토자, 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현장감사 전체기간동안 감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로 표기

5) 실사(입회)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실사(입회)장소 위주로 기재 (예, 본사 창고 등 5개 사업장)

6) 조회를 실시한 경우는 "O", 조회대상이 있으나 조회를 생략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는 "-" 로 표기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조회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내용을 기재 (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

8)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 및 커뮤니케이션한 날짜를 기재 (예, 횟수 : 2 회, 수행시기 : 2014.10.14, 2015.2.12)

9) '감사 활용 내용'은 구체적인 업무 성격과 범위를 기재하며, 다수의 활용 건이 있는 경우 구분하여 표시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구분[1]	일자	참석자[2]	방식[3]	주요 논의 내용
1				
2				
3				
4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를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
2) '참석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 각각에 대해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기재
3)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

5.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주]

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하는 감사보고서에 중요성 금액 및 그 판단근거를 첨부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5.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임

※ '중요성'은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전반적인 감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감사대상 회사에 대해 적용한 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1]	전기[2]	판단근거[3]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수행 중요성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주: 1) ① 중요성 기준이 감사 과정에서 수정된 경우 최종 중요성 금액을 기재
②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은 유형별로 각각의 중요성 기재
2) ① 「중요성 기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당기)의 직전 사업연도(전기) 해당 내용은 작성하지 않음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여 기재하고, 각주를 달아 수정 내용과 사유를 설명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 전기 중요성은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있는 수치를 기재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힘
3) ① 중요성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활용된 벤치마크(예: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매출액, 자산총액 등), 적용된 비율, 기타 고려사항 등을 기재
② 회사가 특정 벤치마크를 선택한 구체적 사유, 특정 비율을 적용한 구체적 근거를 기재
③ 당기와 전기의 중요성 산출을 위한 벤치마크, 적용된 비율 등이 다른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하되, 전기·당기 감사인이 다른 경우에는 감사인이 변경된 사실을 기재